

정책자금상담센터 컨설팅 안내



법인전환

■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고려 이유

중소기업, 자영업자, 소상공인, 기타 서비스업종에 종사하는 사업주들이 세법변경(세율)으로 당황스런 상황이 발생.

특히 성실신고확인제도 도입과 성실신고확인대상 확대가 가장 까다로움

2015년 세율 (지방소득세 생략)

성실신고확인제 구분		개인		법인	
도소매업, 광업	20억 이상	1,200만원 이하	6%	2억 이하	10%
제조업, 음식숙박업	10억 이상	1,200~4,600	15%	2억~200억	20%
서비스업 (교육, 병원, 기타서비스)	5억 이상	4,600~8,800	24%	200억 초과	22%
		8,800~1.5억	35%		
		1.5억 이상	38%		

■ 법인전환 시기

- 개인과 법인의 세율이 워처럼 2~4배 까지 차이가 남
- 성실신고확인대상이 매출액기준 도소매는 30억→20억, 제조업은 15억→10억, 서비스업은 7억→5억으로 매출액이 하향 인하여 대상자가 확대 됨
- 성실신고대상 사업주가 되시면 경비인정(증빙문제), 성실신고비용 등 여러 가지 경비지출 부분이 추가로 생기게 됨

해결책 : 법인전환

법인전환 시 절세방향 및 주의사항

- 법인설립시 작성하는 법인정관에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이나 산재법에 의해 보호를 받고 있는 반면, 사업주는 법 적용 예외임
- 임원은 정관의 규정에 의해 보호되므로 유족보상금지급규정, 임원보수지급규정, 상여금지급규정, 퇴직금지급규정, 퇴직위로금지급규정 등의 내용이 잘 반영되어 있어야 함
- **퇴직금과 유족보상금규정 등이 절세와 관련**
- 법인전환시 또는 신규법인 설립시 법인정관이 중요한 만큼 잘 정비해야 하고 **최신 세법에 맞게 매년 수정을 해야 함**

※ 최근 임원퇴직금관련 세법이 변경되어, 2015년도가 지나면 2016년부터 임원퇴직금관련 세율이 불리하게 적용됨.

(예: 퇴직금수령액이 점차적으로 줄어드는 상황이 발생)

따라서 매년 바뀌는 세법에 관심을 갖고 정관변경에 신경을 써야 함.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또는 신규법인 설립시 특허권, 영업권평가를 통하여 비용처리 및 절세도 가능합니다.